

출자전환차액상당액 손금산입 특례 적용신청서

신청인	① 상호 또는 법인명	② 사업자등록번호
	③ 대표자 성명	④ 법인등록번호
	⑤ 사업장(본점) 소재지 (전화번호:)	
	⑥ 업종	⑦ 사업 개시일
	⑧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	

신청내용	⑨ 출자전환일 현재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4조의33제4항에 따른 출자전환대여금등의 장부가액에서 해당 출자전환대여금등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해외건설사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를 뺀 금액	
	⑩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「법인세법」 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등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	
	⑪ 출자전환차액상당액(⑨-⑩)	
	⑫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4조의33제4항에 따른 손금산입액 = [출자전환차액상당액(⑪) -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외건설사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(0보다 작은 경우 0)] × 10/100	
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4조의33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30제8항에 따라 출자전환차액상당액 손금산입 특례 적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확인자
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첨부서류	없음	수수료 없음
------	----	-----------